

 주식회사 금창 GUM CHANG	프로세스 맵	문서번호	
		개정번호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2023년 05월 22일
		페이지	

프로세스 책임자	경영지원 부서장	1 / 12
----------	----------	--------

결	담	당	검	토	검	토	승	인
재	/		/		/		/	

기호	개정일자	시행일자	개정내용	배 포 처	부서명	확인
00	2023-01-10	2023.01.10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생관	
01	2023.05.22	2023.05.22	내용 일부 개정		생산	
					자재	
					관리	
					개발	
					생기	
					IT	
					연구소	
					협지	
					Q.C	
					Q.C	
					Q.C	

 주식회사 금창 GUM CHANG	프로세스 맵	문서번호	
		개정번호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2023년 05월 22일
		페이지	

적용범위 및 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수립
-----------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주관	세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자율준수 “자율준수” 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2 공정거래 관련법규 “공정거래 관련법규” 는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3 공정거래 관련법규 “경쟁당국” 은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3. 4 공정거래 관련법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3. 5 공정거래 관련법규 “자율준수관리자” 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6 공정거래 관련법규 “자율준수추진사무국” 은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조직을 말한다. 제 4 조 선임 4. 1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은 이사회에서 승인 되어야 한다. 4. 2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시, 그 후임자는 전항의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권 한

 주식회사 금창 GUM CHANG	프로세스 맵	문서번호	
		개정번호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2023년 05월 22일
		페이지	

3 / 12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았으며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1. 5.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5. 2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5.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5.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 의 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6.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세부적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1. 7.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7. 2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3. 7.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 요구
4. 7. 4 기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5. 7. 5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6. 7. 6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7. 7. 7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8. 7. 8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9. 7. 9 임직원 제재 조치를 위한 협의회 소집 및 운영
10. 7. 10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11. 7. 11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회사의 지원

1. 9.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9.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율준수추진사무국 및 관련 부서

1. 10. 1 자율준수추진사무국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회사 전체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주관한다.
2. 10. 2 정책지원팀은 회사의 자율준수추진사무국을 담당한다.
3. 10. 3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자문, 조언, 검증 등 법률자문은 법무팀에서 담당한다.

 주식회사 금창 GUM CHANG	프로세스 맵	문서번호	
		개정번호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2023년 05월 22일
		페이지	

4 / 12

제 11 조 설치 및 구성

11.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추진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 기구로서 관련부서의 임원, 팀장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1. 2 자율준수협의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사전업무협의의무

12.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2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산하의 자율준수추진사무국 및 법무팀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2. 3 각 부서장 및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 신고의무 및 제보자 보호

- 12조의 2.1 임직원은 업무추진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팀(부서)장에게 보고 또는 자율준수추진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2조의 2.2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3조의 2.3 임직원은 내부고발자 및 보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12조의 2.4 회사는 내부고발자 및 보고자가 인신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12조의 2.5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12조의 2.6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그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3 조 자율준수편람

13.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3.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3.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자율준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위만 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 한다.

14. 1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한 자율준수실태 점검, 조사 15. 2 1항의 점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시행
14. 2 1항의 점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시행
14. 3 관련부서에 대책 이행요구 및 이행점검

제 15 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 부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2016.6.17>

15. 1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주식회사 금창 GUM CHANG	프로세스 맵		문서번호	
			개정번호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2023년 05월 22일
			페이지	

2. 15. 2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16.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16. 2 자율준수관리자는 범위반 모니터링 등에 의하여 적발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인사담당 부서 및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그 세부절차 등은 공정거래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다. 동 제재규정 外 추가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6 조의 2 임직원에 대한 포상

1. 16조의 2.1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팀(부서)에 대해서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16조의 2.2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팀(부서) 및 임직원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3. 16조의 2.3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면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문서 관리

1. 17.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 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17.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17.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18 조 운영성과 평가

1. 18. 1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2. 18. 2 전항의 운영성과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9 조 공 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위 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22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 추가조항 등록 : 상호 계약체결/이행시 준수 및 금지사항 기준 추가

제 23 조 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맵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문서번호

개정번호

개정일자

페이지

01

2023년 05월 22일

6 / 12

1. 23. 1 ㈜금창과 협력사는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23. 1.1 서면의 사전발급

가.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납품이 빈번한 거래의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금창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라.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2. 23. 1.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가.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위 가.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라.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마.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협력사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바.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사.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23. 1.3 명확한 납기

가. (주)금창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다. (주)금창은 협력사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23. 1.4 객관적 검사기준

가. 발주부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발주부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23. 1.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 협력사에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부품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협력사에 제조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을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조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을 때에는 협력사가 위탁 받은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주)금창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바. (주)금창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프로세스 맵	문서번호	
		개정번호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2023년 05월 22일
		페이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협력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주부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발주부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 (주)금창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협력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부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발주부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아. (주)금창이 하도급대금을 발주부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6. 23. 1.6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주)금창과 협력사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세부기준은 클레임보상협정서에 의한다.

7. 23. 1.7 계약 해제·해지

가. 사유는 (주)금창과 협력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주)금창 또는 협력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①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상대방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화의개시 및 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③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 ④ 상대방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다.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①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② (주)금창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협력사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23. 2 (주)금창과 협력사는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 23. 2.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나.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에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 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주)금창(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바.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주)금창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프로세스 맵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문서번호

개정번호

개정일자

페이지

01

2023년 05월 22일

8 / 12

사.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아.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통지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23. 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협력사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아.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자.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위탁을 한 후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차.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는 행위

카. 원도금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제작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다.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23. 2.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23. 2.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가. 협력사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발주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다. 협력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라. 협력사에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마.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23. 2.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나.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설계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 통지(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6. 23. 2.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가.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23. 2.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사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8. 23. 2.8 부당특약 행위

프로세스 맵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문서번호

개정번호

개정일자

페이지

01

2023년 05월 22일

9 / 12

가.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나.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다. (주)금창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협력사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제 24 조 계약 이행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 이행)

1.24. 1 (주)금창과 협력사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4. 1.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3.24. 1.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한다.

4.24. 1.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24. 2 (주)금창과 협력사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24. 2.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가.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발주부품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라.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마.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바. 협력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사. 협력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률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24. 2.2 부당 반품 행위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바. 협력사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 협력사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24. 2.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교부 없이 계약 시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① 감액 사유 및 기준

② 감액 물량, 금액, 감액방법

나.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주식회사 금창 GUM CHANG	프로세스 맵	문서번호	
		개정번호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2023년 05월 22일
		페이지	

라.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도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바.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사.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자.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금창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카.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타.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행위

파. 발주부품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및 환차손 등을 협력사에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24. 2.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가. 환차손 등을 협력사에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다.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라. 기타 협력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24. 2.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사에 전가하는 행위

6. 24. 2.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24. 2.7 보복 조치 행위

협력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24. 2.8 탈법행위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사에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으로, 지연이자 등을 협력사에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24. 2.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사에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24. 2.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가. 협력사에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 을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나. 협력사에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24. 2.11 기술자료 제공 강요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에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형 방법에 관한 자료

 주식 회사 금창 GUM CHANG	프로세스 맵		문서번호	
			개정번호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2023년 05월 22일
			페이지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③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나. 협력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

11 / 12

2. 임직원제재규정

주관	세부 내용
	임직원 제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법규(이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 3 조. 권한 및 절차 1. 3. 1 자율준수관리자는 법위반 모니터링 실시결과, 제보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임직원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하여, 인사담당 부서 및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3.2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의 법위반 사실이 경미하고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징계 없이,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3.3 자율준수추진사무국은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실무를 진행하며, 제재검토 및 최종조치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 제 4 조. 제재 기준 1. 4.1 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회사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발생 또는 위법, 부당행위의 관련금액과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준을 차등하여 반영한다. 2. 4.2 법 위반행위의 관련자는 선량한 임직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거나 법 위반행위의 시정이 모니터링 실시 이전에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4.3 제재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 입증자료가 구비된 경우에 한정한다. 4. 4.4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2개 이상 제재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한다. 5. 4.5 본 규정에 의한 법 위반행위의 제재기준은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4.6 인사담당 부서 및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는 인사규정의 징계처분(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중징계, 경징계 등으로 한다. 7. 4.7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4.8 회사의 경영여건 및 법규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식회사 금창 GUM CHANG	프로세스 맵		문서번호	
			개정번호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일자	2023년 05월 22일
			페이지	

12 / 12

■ 성과지표 관리

N0	성과지표	단위	산출방법	주기	관리부서
1					
2					

■ 기록 관리

N0	기 록 명	양식번호	관리부서	보관기간	보존기간	비 고
1						
2						
3						
4						
5						